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김은정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김 은 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under the UNFCCC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책임자 : 김은정(연구위원)  
KIM, Eun-Jung

2017. 10. 31.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이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전지구적인 과제
  - 그러나 아직 개별 국가별로 파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이행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파리협정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들은 현재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대축을 기반으로 미래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5년간 이행되어 왔으나, 빈곤의 다면성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및 기후변화, 환경지속성 같은 글로벌 이슈를 배제한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
    - SDGs의 17개 목표 안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에너지, 식량 안보, 산업화,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 및 그 대응과 관련된 영역들이 다수 포함

-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및 해양, 에너지, 도시, 산업화 및 생산과 소비의 연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성평등과 교육, 보건의 관계를 주제로 4년 주기 검토를 제안하며, SDGs 기간 동안 국가 당 적어도 2회 이상 자발적 국가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실시 권고
- 국내적 SDGs 이행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이 ODA와 국제적 지원에 관한 서술이며, 국내적 이행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음
  - 국내적 SDGs 이행과 관련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존의 연구가 한 분야나 영역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 SDGs의 각 세부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의 여러 세부 영역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
- ▶ **이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SDGs 목표의 특성상 다양한 세부 주제와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결시켜 에너지, 산업, 환경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이행방안 모색**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국제 동향 분석
    -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안 제시

## II. 주요 내용

### ▶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 저감의무 전망

- 교토의정서를 비롯하여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오랜 기간 논의되어온 다자간 협의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제시
  -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로 빈번한 재난·재해 등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확대
  - 탄소세 도입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감축 제도 이행
- 기후변화협약 이행 및 자발적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적 약속 이행이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전망과 예측은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
  - 이에 기후변화 협약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 방안 모색에 기여
  -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기존의 정책과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post-기후변화협약 시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 방안 마련

### ▶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경우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 구사에 따라 국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운영해온 기존의 저세율 기반의 저에너지가격 체계 개선 필요

-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하여 유지되어온 기존의 저에너지가격 체계는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시장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 야기



- 탄소배출 감축에 있어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 및 국가감축목표 달성여부에 회의적 시각 제기
- 이에 저에너지가격구조를 지닌 국내 에너지 시장의 가격구조 개편을 통하여 탄소배출 감축 기술·신재생에너지·에너지신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이행 방안 모색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
  - 에너지신기술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도입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산업기술 분야에 관한 이행방안 도출**

- 친환경에너지 및 기후적응을 위한 모니터링과 체계적 영향평가에 관한 산업기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공유 방안 분석

▶ **기후변화 협약의 성공적 대응 및 지속가능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법제의 정비**

- 파리협정 상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내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시장 활성화 및 제도적 장애물로 작용할 규제 개선
  - 하지만, 화석연료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착화는 왜곡된 에너지 시장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기후변화 관련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제도 보완 및 정비방안 모색
  - 시장·기업친화적 환경정책 수립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 Ⅲ. 기대효과

-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이행방안 마련
  - ▶ 지속가능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에너지 세제 및 에너지 시장 구조 정착
  - ▶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 ▶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세, 에너지신기술, 친환경기술



## Abstract

###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Climate Agreement for climate change responses after 2020 at the 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 21) in December 2015, which is to succeed to the Kyoto Protocol after its expiration in 2020, climate change responses have emerged as a global task.
  - However, most countries are yet to determine how to concretely integrate the Paris Agreement into their regulatory mechanisms and institutions and implement it.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Republic of Korea.
    - Due to its vagueness, the Paris Agreement has thus far failed to give rise to significant further discussions of climate change responses.
  
- ▶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 set of 17 goals and 169 targets for balanced development, were established to guide the world during a period of fifteen years between 2016 and 2030. These goals in three sectors -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future needs and reflect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The MDGs for eradicating pover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ere implemented over a period of fifteen years

between 2000 and 2015. However, this agenda had limitations such as the oversimplification of the complexity of poverty and the omission of glob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from its list of goals and targets.

- In contrast, the 17 SDGs include climate change, as well as issues and area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such as energy, food security, industrialization and biodiversity.
- The UN proposed a quadrennial review on issues such as food security, climate change, life on land and below water, energy, cities, industrialization, link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y, gender equality, education and health, recommending also that countries perform a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at least twice during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DGs.
- Much of the section on the national-level implementation of the SDGs is devoted to the description of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international aid, with very little information directly or concretely related to national implementation.
- Studies on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or national policymak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re therefore sorely needed. Existing studies mostly deal with only one or a few of the areas covered by the SDGs agenda. Given that the targets of the SDGs are organically linked to one another, a comprehensive study discu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 broad perspective and examining all the various areas of the SDGs is needed.

- ▶ In light of the need to approach the ques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nsidering a comprehensive set of issues and areas making up the SDGs - that are widely varied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global goals encompassing all sectors of society-, this study explores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response commitments which can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such sectors as energy, industry and environment; in other words, a strategy that links climate change responses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 Analysis of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strategy for improving national policies, mechanisms and process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the Republic of Korea.

## II. Major Content

- ▶ **Recen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Forecasts on Carbon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 Forecasts based on the analysis of key contents of the various multilateral agreements, including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hat are the outcomes of decades of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 A stronger need for the reduction and reg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prevent natural disasters that are becoming increasingly frequent and severe due to global warming.

- Countries expected to resort to various different means such as carbon taxes and carbon emissions allowance trading.
  - Given the major impact that th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Convention commitments and international commitments for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has on the national economies of countries, related forecasts and predictions provide important pointers to guide sustainable development efforts.
  - The study explores an ideal response strategy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s related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the future outlook thereof.
  - Detaile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individual sector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st-Climate Change Convention era, that are design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isting policies, regulatory mechanism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that were put in place following the entry into effect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 ▶ **The pricing system in the Korean energy market where prices are kept low thanks to low energy taxes, to help maintai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Korean good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as part of the export-oriented national growth strategy, needs to be overhauled.**
- Korean energy prices maintained low to ensure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re considered to have importantly contribute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 However,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which remain heavily tilted toward fossil fuels can continuously skew the Korean energy market, causing various negative effects.
  - Economic impacts expected from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and skepticism on the ability to achieve national emission reduction targets.
- The study explores regulatory mechanisms and processes to overhaul the price system in the Korean energy market, encourage the utilization of carbon emissions reduction technologies and new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 Overhauling the energy pricing system.
  - Support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 ▶ **Measures to support industrial technology fields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new engines for growth that will lead the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industrial technology fields related to environment-friendly energy sources, the monitor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 Financial support for these fields and facilitating technology sharing per the Paris Agreement.
- ▶ **Regulatory Overhaul to Enable Successful Responses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Energizing the markets to boos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new technolog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removing regulatory obstacles so as to effectively achieve the national emission reduction target per the Paris Agreement.
- Improvement of regulatory mechanism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the energy market skewed by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energy consumption structure that are heavily reliant on fossil fuels.
- Energizing the markets and other support measures and systems to help boost competitiveness in climate change-related new technologies.
- Regulatory overhaul and improvement in various relevant fields to better respond to climate change.
- Create new engines for growth by designing a market and business-friendly environmental policy.

### III. Expected Effects

- Provide a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commitments that can furthe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Create an energy tax system and an energy market structure which can lay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Build the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fostering sector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s into new engines for growth.

▶ **Key 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change responses, Climate Change Convention, energy taxes, new energy technologie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 목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	3
Abstract .....	9

##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

##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 23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	25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	25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	34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	36
1.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주요 내용 .....	36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현황 .....	40

## 제3장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 45

제1절 에너지 분야 .....	47
1. 에너지 분야의 해외 사례 .....	48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52
제2절 산업 분야 .....	57
1. 산업 분야의 해외 사례 .....	59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62

# 목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절 기후변화 분야 ..... 64

1.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사례 ..... 66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 70

## 제4장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73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 7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정책의 목표 ..... 7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안 ..... 83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 88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 ..... 88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안 ..... 92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 95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정책의 목표 ..... 95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개선안 ..... 98

## 제5장 결 론 / 103

참고문헌 ..... 10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Post-2020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에 채택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전지구적인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개별 국가별로 파리협정의 내용을 어떻게 제도화하여 이행할 것인가 확정되지 못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 기후변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으나, 파리협정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그 협의 또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존’의 3대축을 기반으로 미래의 필요성까지 고려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2016년부터 향후 15년간 인류가 나아갈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의 MDGs는 저개발국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5년 간 이행되어왔으나 빈곤의 다면성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및 기후변화, 환경지속성 같은 글로벌이슈를 배제한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새롭게 관련 영역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안에는 기후변화분야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이

외에도 에너지, 식량안보, 산업화, 생물다양성 등 기후변화 및 그 대응과 관련된 부문이 세부 지표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SDGs의 이행방안으로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및 해양(2017년), 에너지, 도시, 산업화 및 생산과 소비의 연계(2018년),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양성평등과 교육, 보건의 관계(2019년)를 주제로 4년 주기 검토를 제안하며 SDGs 기간 동안 국가 당 적어도 2회 이상 자발적 국별 평가(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의 실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또한 2016년 UN에 제출한 나라별 보고서에서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와 높은 교육수준, 평균수명 연장 등 발전과 동시에 사회양극화문제, 대도시 인구집중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등장했음을 언급하면서 SDGs 이행을 위해 22개 부처가 주체임을 밝히고, SDGs 채택 이후 2016년 1월 제3차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과 140대 국정과제 등에 SDGs 관련 내용을 제도화하였음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SDGs 이행지원을 국제적 이행으로 보아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ODA와 국제적 지원에 대한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국내적 이행에 관하여는 검토가 미흡한 상태이다. 즉, 국내적 SDGs의 이행과 관련한 연구나 정책 수립은 많지 않으며, 기존의 연구들 또한 대부분 SDGs의 한 분야나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어 SDGs의 각 세부 목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의 여러 세부 영역들을 다룬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SDG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 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대응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던 배경과 SDGs 세부목표들을 고려할 때 다각도 적으로 그 이행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만큼 이에 관한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SDGs의 이행방안 모색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후변화 대응과 SDGs에 대해 연관시키거나 SDGs에 대해 여러 산업이나 영역 측면에서 접근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만큼, 본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목표인 SDGs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안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하고, 기후변화와 연관된 몇 가지 영역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정책수립방안의 모색을 주된 연구로 정하였다. 이에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SDGs 목표의 특성상 다양한 세부 주제와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동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결하여 에너지, 산업, 기후변화라는 세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세부 내용 파악
- 에너지, 산업, 기후변화라는 세부 영역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 국내적인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제2장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 제2장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변화협약

## 제1절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 1.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 가. 지속가능발전의 배경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는 1971년 스위스 Founex에서 개최된 개발 및 환경에 관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회의, 같은 해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2849 (XXVI), 그리고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강조한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sup>1)</sup>의 연구보고서, 스톡홀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1972)<sup>2)</sup> 등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이후 1973년에 설립된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에서 환경 보전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고 이를 위하여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관리하는 것’

1) 로마클럽이란 “1970년 세계 각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들을 구성원으로 심각한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핵무기개발에 따르는 인간 사회의 파괴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연구단체”를 말한다(김성배, 「녹색 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33-4면).

2)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서 UN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and Environment: UNCHE)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는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동의 과제임이 명시됨과 동시에 UN인간환경선언과 UN환경계획(UNEP)의 만들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동회의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성배, 앞의 보고서, 34면).

3) 김기숙,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분석", 국제법학회논집 제52권 제3호, 2007, 13면.

이라고 정의<sup>4)</sup>하였고, 1987년 4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각종 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성을 먼저 평가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제대로 보존된 환경속에서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통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갈등에 대하여 ‘공동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이라는 원칙을 통하여 그간 논의되어 왔던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에 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필요한 선언적 지침으로 알려진 리우선언은 5개항의 전문과 27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sup>6)</sup>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 회의에서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정부 및 모든 이해당사자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행한 성과의 종합평가, 의제2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리우회의 이후 새로 제기된 문제 및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대책 및 수단의 명확화, 2002년 회의결과의 효과적 조치, 의제21의 이행증진을 위한 실천계획,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UN시스템의 능력 강화 등 대책마련을 제시하였다.<sup>7)</sup>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회의에서는 기아문제, 영

4) 김성배, 앞의 보고서, 35면.

5)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김성배, 앞의 보고서, 36-7면).

6)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0면 참조.

7) 정영근·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발전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0권 1호, 한국질서경제학회, 2007, 70면.

양실조, 분쟁, 조직범죄, 자연재해, 테러리즘, 인종차별, 질병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 같은 환경과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강조하면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이 거버넌스 구축과 개선에 있어 중요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sup>8)</sup>

## 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다르며,<sup>9)</sup> 그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0)</sup>

### (1) 국가간 장기협력을 위한 원칙

리우선언 원칙 4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환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사회 부문에 있어 국가간 거래나 협의를 통하여 이행하는 경우 환경적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과 WSSD 이행계획에서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통합의 대상영역을 넓히고 있다.<sup>11)</sup>

1994년 12월 17일에 체결된 ‘리스본 에너지헌장조약(Lisbon Energy Charter Treaty)’<sup>12)</sup>은 에너지 분야의 계약 당사자들 간 장기협력을 위한 국제 협약으로 동 조약에 따라 각 당사국은 천연자원에 관한 각국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sup>13)</sup> 다만, 동 협약 제19조에 따라 조약 서명국들은 유해한 환경영향에 있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

8) 정영근·장민수, 앞의 논문, 70-1면 참조.

9) 김홍균, 「국제환경법」, 2010, 74면.

10)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야,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한국법제연구원, 2016, 53-9면의 분류를 참고하여 작성함.

11) 김기숙,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분석", 국제법학회논집 제52권 제3호, 2007, 23면.

12) Energy Charter Treaty(ECT), 1994.

13) Energy Charter Treaty, Article 18.

켰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기로 하였다.<sup>14)</sup> 2005년 스위스에서 채택된 ‘올리브 오일과 테이블 올리브에 관한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 on Olive Oil and Table Olives)<sup>15)</sup>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올리브 생산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27일 채택된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에서는 목재 무역에 있어 환경에 관한 의무를 준수를 통하여 제조업에 이바지 할 것을 정하고 있다.<sup>16)</sup>

## (2) 자발적 노력으로서의 원칙

자발적 노력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원칙은 환경에 대한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개발에 있어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09년에 채택된 ‘국제재생에너지기구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sup>17)</sup>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태양열,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수력 및 해양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기존의 석탄 중심의 경제를 재생에너지원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18)</sup> 이는 환경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당사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기존 자원 사용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3년 아프리카 연합이 체결한 ‘자연 및 천연자원 보호에 관한 아프리카 협약(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sup>19)</sup>등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sup>20)</sup>

14)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yá,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앞의 책, 54면.

15) International Agreement on Olive Oil and Table Olives, United Nations.

16)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ITTA), 2006

17)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2009.

18)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Article 2 Paragraph (b).

19)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Maputo Convention).

20)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yá,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앞의 책, 55면.

### (3) 개발권으로서의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 개발에 있어 환경에 대한 책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 협약의 범주 안에서 당사국들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단지 그들의 노력이 환경 보호에 머무르는 것 외에 관련 지역 공동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 또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한다.<sup>21)</sup> 이는 지역 개발에 있어서 그 지역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나 관련 지원이나 투자 정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국제 조약들로는 2005년 12월 12일 지다에서 채택된 ‘홍해 및 아덴만에서의 육상기반 활동으로부터의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의정서(Protocol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sup>22)</sup>에서 멸종위기 종 목록의 작성, 상호합의를 통한 특별보호구역 설정, 아덴만과 걸프만에서의 외래종의 추가 침범 방지 및 보호지역 관리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토착종 보호와 보호지역 보전의 내용 또한 담고 있다.<sup>23)</sup>

### (4) 경제 활동 상 환경적 제한을 위한 원칙

특정 어종이나 개별 해역의 어업과 관련된 조약들 중 1993년에 체결된 ‘인도양참치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정(the Agre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2001년 채택된 어업의정서(Protocol on Fisheries), 2002년 2월 벨리즈에서 조인된 카리브해 지역 어업기구 설립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Caribbean Regional Fisheries Mechanism), 2006년 7월 남인도양 어업협정(SIOFA Agreement) 등의 경우에는

21) the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Gorillas and their Habitats Section 1 (6) paragraph (h) of the action plan provided for under Article 8 of the Agreement.

22) Protocol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Jeddah.

23) 한국법제연구원 옮김(gyula Bárdi,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앞의 책, 56면.



세대 간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등을 살펴보면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어획량에 있어 남획제한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데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국이 미래세대를 위하여 적정량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역할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어업관행을 구축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경에 관한 책임과 보호, 지역공동체에 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현 세대 외에 미래세대에 관한 보호를 통한 사전 예방과 이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자발적 국제 관행과 기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 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가난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며’, 가난이 경감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sup>25)</sup> 이는 2000년에 각국에서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기반으로 시행되어 온 것으로 2015년에 그 효력이 만료되었다.<sup>26)</sup> 이 새천년개발목표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교육, 건강에서 남녀평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전 세계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up>27)</sup>

24)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diya,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앞의 책, 58면.

25) 월드워치연구소, 2014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도요새, 2014, 282면.

26) 월드워치연구소, 앞의 책, 282-3면.

27) 월드워치연구소, 앞의 책, 283면.

<표 1>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세부 목표<sup>28)</sup>

목 표	세부 목표
1. 극도의 가난과 기아 근절	1990~2015년 간 하루 소득 1달러 이하 인구 비율 반감
	여자와 청년층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호한 일자리 보장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1990년 기준 50% 감소
2. 보편적인 기본 교육 성취	2015년까지 모든 지역의 남녀를 불문한 아동들이 기본 교육의 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3. 남녀평등 증진 및 여권 신장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의 남녀 불평등을 2005년까지 제거하고 2015년까지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의 불평등을 제거
4. 아동 사망률 감소	1990~2015년 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2/3 감소
5. 모자건강 개선	산모 사망률을 3/4 감소
	모든 임산부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6. 에이즈,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박멸	2015년까지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환자 수 감소 시작
	2010년까지 에이즈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전폭 확대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발병을 막고 환자수를 줄여나감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국가 정책 및 계획과 통합하고, 환경 자원의 상실을 역전시킴
	생물다양성 감소를 줄이고, 2010년까지 상실물을 현저히 줄임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 위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 반감
	2020년까지 최소한 1억명의 빈민窟 거주자들의 생활 현저히 개선

28) 월드워치연구소, 앞의 책, 284면 표 참조.

목 표	세부 목표
8. 발전을 위한 전세계 협력 관계 진전	개방된, 규칙에 기초한, 예측가능한 차별이 없는 무역 및 금융 시스템 개발
	저개발 국가들의 특수한 필요에 부응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 포괄적 대처
	제약회사들과의 협력 하에 개발도상국들에 기본적인 약품 공급
	민간 부문과 협력해서 새로운 기술, 특히 정보와 통신의 혜택의 배분

새천년개발목표는 리우+20 정상회의의 성과보고서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통하여 환경·경제·사회 전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상호관련성을 통하여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할 것을 약속하였다.<sup>29)</sup>

따라서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는 SDGs와 그 세부 이행 지표 등 체제가 합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간 국내 이행방안 수립 및 성과 관리 등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개발도상국들에게만 적용되었던 MDGs와 달리 SDGs는 전 세계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MDGs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차별성이 있다.<sup>30)</sup>

29) 월드워치연구소, 앞의 책, 285면.

30) ○ 기존의 MDGs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개발 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춘 개도국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로 개발협력력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반면에, SDGs는 기초적인 개발 수요 충족에서 더 나아가 사회·경제·환경 전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 MDGs의 경우에는 이행 결과 개발의 효과가 지역별, 성별, 계층별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못했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이 개발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점에 반성이 존재함을 바탕으로 SDGs의 경우에는 취약계층과 특수 상황에 처한 국가(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군소도서개도국 등)의 필요 강조 및 개발의 이익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및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정진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7년 5월 17일 세미나 자료집 발제문, 20면)

이러한 국제적 이행체제는 이러한 SDGs는 개발도상국들에만 적용되었던 새천년개발 목표와는 달리 그 발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게 된다. 2014년 8월 제출된 SDGs의 17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SDGs 17개 목표<sup>31)</sup>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 빈곤퇴치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10. 불평등 해소
3. 보건 증진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13. 기후변화 대응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14.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7. 에너지 보급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16.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표 3> MDGs와 SDGs 비교<sup>32)</sup>

구분	새천년발전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간	2001~2015	2016~2030
구성	빈곤퇴치 등 사회분야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31)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32) 정진규, 앞의 발제문, 20면.

구분	새천년발전목표(M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대상
		(포용성) 취약계층(여성·아동 등),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 등 포함
분야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 중심	(포괄성) 사회·경제·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정부·시민사회·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이행평가	관련 메커니즘 미비	유엔 ECOSOC(고위급정치포럼)이 핵심 역할

##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제도 현황

### 가.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우리 정부는 리우선언의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국내에서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 이행 제도로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2007년에 제정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운영하게 되었다.<sup>33)</sup>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하여 환경,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부는 지속가능성의 실현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 안목에서의 계획 수행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sup>34)</sup>

이러한 동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지속가능성센터 등 관련 환경(시민)단체에서는 그 핵심내용을 5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sup>35)</sup> ① 포괄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② 연계성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33) 이에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부칙에 의하여 법률 제8612호로 2007년 8월 3일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8년 2월 4일에 발효되었다.

34) 최윤철, “지속가능발전원칙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100-105면 참조.

35) 김은경,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2014년 12월 11일 제2세션 발제문 35페이지 참조.

고려하고 있으며, ③ 형평성으로 세대 간, 세대 내, 생물종 간, ④ 안전성으로 물리적 안전, 인권 민주적 참여권한, ⑤ 신중성으로 정치, 사회, 기술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20세기 후반이후에는 복지국가론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분배를, 21세기 초반 이후에는 지속가능발전론에 따라 경제성장, 재분배, 환경보전 모두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지속가능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전략의 하나로 선택하는 차원이 아닌 발전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할 21세기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보고 있다.<sup>36)</sup>

동법은 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④ 경제성장·사회통합·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sup>37)</sup>

#### 나. 「지속가능발전법」과 최근 지속가능발전 관련 입법 동향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기본법상의 지위가 일반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총 22개 조문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의 제3항과 제4항, 제12조가 삭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편입되게 되었다.<sup>38)</sup>

현행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

36) 이러한 발전의 개념에 관하여 ‘성장’은 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양적 팽창임에 비하여, ‘발전’이란 부의 형성과정과 결과로 인한 삶의 질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김은경, 앞의 발제문, 35면 참조).

37)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국무조정실, 2014, 58면.

38)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355-9면 참조.

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사회적 형평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7월 송옥주 의원실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는 함과 동시에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2007년 제정 당시의 입법형태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개정이유로는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 및 현재 세대의 필요의 충족 및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및 유엔에서 제시된 SDGs 2030의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었던 지속가능발전과의 개념적 혼란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법률체계를 정리하고, 양법상 운영되는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SDGs 등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의 전략 수립과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 제2절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탄소배출저감의무

### 1.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주요 내용

#### 가.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기후변화는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최대의 환경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1988년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1990년에 발간된 제1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규범의 마련”을 요구하였다.<sup>39)</sup> 이를 계기로 유엔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통하여 각 당사국 간 국

39) 김찬우, “기후변화체제의 형성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Focus , 2005.2, 20-22면.

제적 공동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정부 간 협상제도를 이행하기에 이르렀고,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일명 리우회의라 한다)’를 발판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따르면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에 있어 해결방안으로 동 협약에서는 ‘형평성에 기초한(the basis of equity)’, ‘차별화된 공통의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각각의 능력에 따라 (respective capabilities)’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기에 이르게 되었다.<sup>40)</sup>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은 당사국총회에서 이루어지며, 동 총회는 1995년 제1차 독일총회가 개최된 2015년 파리, 2016년 마라케쉬, 2017년 본에서 개최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중 하나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실질적 감축 목표를 제시<sup>41)</sup>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축 의무국을 선진국 위주로 정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따라서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배출권 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IET),<sup>42)</sup>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JI) 등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 이행을 위하여 부속서 I 국가들을 정하여 감축의무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였다.

40) 박수진·정지호,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85면.

41)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감축 그리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차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2) 선진국의 저감목표를 고려하여 선진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최대 허용량을 부여한 다음,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그 거래를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2008, 19면.



이후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부터 제2012년 제18차 당사국 총회에 서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즉 post-교토의정서 체제(이하,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에 2013~2020년까지 8년 동안 2차 공약기간에 관한 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나,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2차 공약기간에 불참하면서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sup>43)</sup>

이후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별 감축에 관한 기여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의 제출 절차 일정 및 포함 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파리 협정 전 신기후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sup>44)</sup>

#### 나. 파리기후협정의 주요 내용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 참여한 195개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규범으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 채택에 합의하였고, 동 협정은 교토의정서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새로운 질서와 체제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상의 주된 제도와 감축 의무국에 따른 감축 목표 이행에 관한 부분은 각국별 감축 기여 목표 설정을 통한 자발적 참여라는 새로운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파리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에도 상당한 노력과 지원 방안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장기목표 달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능력배양(capacity-building) 등에 관하여도 세부 이행을 마련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 및 혁신 메커니즘과 이행점검 및 투명성에 관하여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 기후변화 관련 대응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43)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86면.

44)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86면.



자료 :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53면.

〈그림 1〉 파리기후협정의 주요조항의 관계

파리협정은 이상기온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의 현상 방지를 위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여야 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한 목표온도를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기후변화 협상 과정에서 목표 온도가 언급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파리협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목표 온도를 정하고 있다.<sup>45)</sup>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 감축방식이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는 상향식(bottom-up) 감축방식(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5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각국의 자발적 목표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며, 전 세계의 참여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NDC는 5년마다 새로 제출 할 의무를 지니며, 새로 설정되는 NDC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담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46)</sup>

45)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17면.

46) UNFCCC, Paris Agreement Article 4.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제출한 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로 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해외 감축분으로 11.3%의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감축분에 관하여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상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47)</sup>

파리협정의 제7조 7항에 따르면 적응행동에 관하여 개발도상국 지원, 적응행동의 효과성과 지속성 증진 등 적응에 관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 방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동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적응(Adaptation)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sup>48)</sup> 이는 적응력 강화를 통하여 복원력 향상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제도 현황

### 가.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제도

####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2010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위한 이행 방안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과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따라서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을 목표로 삼고, 2050년까지 세계

47) UNFCCC, Paris Agreement Article 6.

48) 환경부, 앞의 책, 40면.

5대의 녹색강국의 진입을 목표로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크게 3가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결정하였다.<sup>49)</sup>

이러한 녹색성장에 관하여 스텐 콕스는 “성장하지 않는 (그리고 성장을 유발하는 부의 불균형한 축적을 배제한)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중력이 없는 태양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을 것”<sup>50)</sup>라고 표현하며, ‘녹색’과 ‘성장’ 개념은 어울릴 수 없다거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사회적 요소가 배제되었다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다.<sup>51)</sup>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차원에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등의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이행 방안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및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등의 성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법은 총 제7장 제64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7장 (보칙)이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축으로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녹색과 관련된 환경경제, 환경경영, 에너지, 기술, 산업, 제품, 금융, 일상생활 등을 핵심어로 설정하였다.<sup>52)</sup>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 부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본법 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하여 이행이 지속되어 온 점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 도입·운영에 있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 등은 기후변화협약 상 국내의 관련 이니셔티브 구축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2013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녹색성장 위원회가 법률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이 되거나,<sup>53)</sup> 정책 운영에 있어 ‘녹색’

49)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2009, 41면.

50) 이기상, “지구 살림살이를 위한 녹색성장-녹색성장의 생명학적 토대 구축 시도”, 환경철학 제11집, 한국환경철학회, 14면.

51)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1), 2009, 219-266면 참조.

52) 전재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36호, 34면.

5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②-⑧ (생략)

이 이전에 비하여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위기 등은 기후변화라는 국제 추세와 적극적인 이행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2018년 제2기를 앞두고 있으며, 제1기의 경우 100%의 무상할당 및 해외 상쇄분 인정에 대한 제한 등으로 거래상으로는 보다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과 EU 등의 사례에서도 거래 시장이 초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등과 국내의 안정적 제도 운영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탄소시장 운영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업체로 지정된 552개 업체 중 283개 업체는 1550만 톤의 배출권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시킴에 따라 가격 형성이나 거래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54)</sup>

### 나. 기후변화 관련 제도의 최근 동향

2017년 7월 26일 송옥주 의원실에서는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안) 발의를 통하여 신기후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이는 파리협정 상 국내 감축목표인 37%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행방안 모색에 그 제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기후변화 적용에 관한 조항이 1개에 불과하여 그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 및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이슈 외에 광범위하게 전 부문에 관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이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4)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최대화두”, 에너지경제 2017.10.3.일자 기사 참조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16030>)

제정안은 6개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서 형평성과 균형성이 견지되도록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조). 아울러 정부와 시·도지사는 국가단위 또는 관할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후변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제13조). 이 밖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환경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법안 제18조). 아울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통하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대상에 이른바 헌법기관까지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제19조, 제22조, 제23조).

또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부분에 보다 많은 조항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예측 시스템 구축 및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취약성·위험에 관한 조사·평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후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또한 정부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법안 제22조). 이 밖에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법안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등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등 이행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법안 제29조)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법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산업·인력을 발전 또는 양성하고,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교육·실천을 증진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3장

#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제1절 에너지 분야

제2절 산업 분야

제3절 기후변화 분야





## 제3장

# 각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이행방안

### 제1절 에너지 분야

<표 4> 에너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up>55)</sup>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7.1. 2030년까지 적당한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7.1.1.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 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2배로 증대	7.3.1. 1차 에너지와 GDP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국	7.a.1. 약속한 1천억 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55) <http://qol.kostat.go.kr/sdg/list.do?idctId=> (최종접속 2017년 10월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서도서 개도국 그리고 내륙 개도국에 각국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7.b.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해외 직접투자금액과 에너지 효율성 투자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 1. 에너지 분야의 해외 사례

OECD 주요 국가의 석유류 및 전기 관련 소비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sup>56)</sup>

<표 5> 주요 에너지에 대한 OECD 회원국의 소비세 세율

	VAT(%)						개별소비세(각국 화폐단위/단위)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단위							1000 리터	리터	리터	MWh	톤	MWh
호주	.	10	10	.	.	.	.	0.392	0.392	.	.	.

56) 김은정 · 성명재 · 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37-8면.

	VAT(%)						개별소비세(각국 화폐단위/단위)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단위							1000 리터	리터	리터	MWh	톤	MWh
오스 트리아	20	20	20	20	.	20	109.2	0.41	0.493	5.89	.	41.32
벨기에	21	21	21	21	12	6	18.51	0.429	0.615	0.5	-	19
캐나다	5	5	5	5	.	.	52.89	0.266	0.336	-	.	.
칠레	19	19	19	19	.	19	2,342	61.72	247.8	-	.	-
체코	21	21	21	21	21	21	660	10.95	12.84	-	133	30
덴마크	25	25	25	25	x	25	2453	3.127	4.568	211.1	x	878
에스 토니아	20	20	20	18.9	.	20	111	0.393	0.423	2.42	.	13.4
핀란드	24	24	24	.	x	24	163.4	0.497	0.673	.	x	22.53
프랑스	20	20	20	17.4	.	17.5	76.4	0.481	0.631	2.79	.	31.72
독일	19	19	19	19	x	19	61.35	0.47	0.655	5.5	x	104.9
그리스	23	23	23	13	x	13	230	0.33	0.67	5.4	x	35.3
헝가리	x	27	27	27	27	27	x	111.8	121.5	-	-	-
아일랜드	13.5	23	23	13.5	13.5	13.5	102.28	0.479	0.588	3.7	52.67	-
이스라엘	18	18	18	x	x	18	2903	2.903	3.03	x	x	-
이탈리아	22	22	22	.	.	10	403.2	0.617	0.728	.	.	73.26
일본	8	8	8	8	x	8	2540	34.64	56.34	-	x	375
한국	10	10	10	.	.	.	72	450	528.8	745.9	.	.
룩셈 부르크	14	17	17	8	x	8	10	0.335	0.462	1.08	x	30.5
멕시코	x	16	16	16	x	16	x	-	-	-	x	-
네덜란드	21	21	21	21	.	21	490.1	0.486	0.767	19.78	.	14.49
뉴질랜드	.	15	15	15	x	15	.	0.004	0.671	1.74	x	-
노르웨이	25	25	25	x	.	25	1599	4.45	5.82	x	.	141.5
폴란드	23	23	23	23	23	23	232	1.459	1.669	0.18	-	20
포르투갈	23	23	23	23	.	23	342.6	0.402	0.618	1.08	.	1
슬로 바키아	.	20	20	20	.	20	.	0.368	0.515	-	.	-

	VAT(%)						개별소비세(각국 화폐단위/단위)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경질 중유	수송용 경유	휘발유	천연 가스	석탄	전기
단위							1000 리터	리터	리터	MWh	톤	MWh
슬로 베니아	22	22	22	22	x	22	239.4	0.474	0.554	6.39	x	21.03
스페인	21	21	21	21	.	21	87.62	0.368	0.462	2.34	.	.
스웨덴	25	25	25	25	x	25	3904	4.883	5.575	274.4	x	278.2
스위스	8	8	8	8	x	8	163.2	0.778	0.75	11.08	x	11
터키	18	18	18	18	18	18	936.7	1.595	2.177	-	-	24.83
영국	5	20	20	5	5	5	111.4	0.58	0.58	-	-	-
미국	.	.	.	.	.	.	.	.	.	.	.	.

- 주: 1. 한국과 일본의 경질중유는 등유(kerosene)를 지칭  
 2. 2013-2015년 중 가장 최근 자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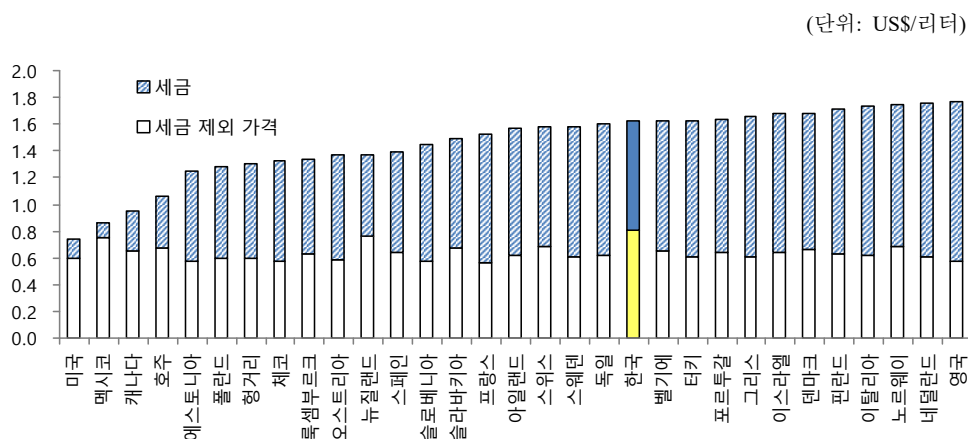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Energy Taxes and Prices, Fourth Quarter 2015.

일반적으로 에너지세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같은 과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종가세는 가격·가치 등을 과세기준으로 정하여 과세하는 체계를 말하며, 종량세란 가격·가치가 아닌 중량, 밀도, 함유비율, 부피, 길이, 횡수 등을 과세기준으로 정하여 세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sup>57)</sup> 위의 표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세의 경우 대부분 개별소비세의 경우 종량세의 과세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종가세에 비하여 저가의 재화·용역에 대한 실효세 부담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억제 정책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가격에 관계없이 세율이 책정됨에 따라 과세 전후의 상대가격 체계가 왜곡될 수 있어 소비자 선택에 왜곡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단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2번째로 높은 가격을 나타내

57)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24면.

고 있으나, OECD 회원국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의 경우 전량 수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원의 기본 자원인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금 체계에서 포함되는 외부비용인 환경오염과 교통오염 등에 관한 사회적 후생비용에 관한 고려가 낮은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자동차 등의 보급·운영도 더 활발하기 때문에 유류 소비에 따른 사회적 외부비용도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sup>58)</sup>



주: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Energy Taxes and Prices, Fourth Quarter,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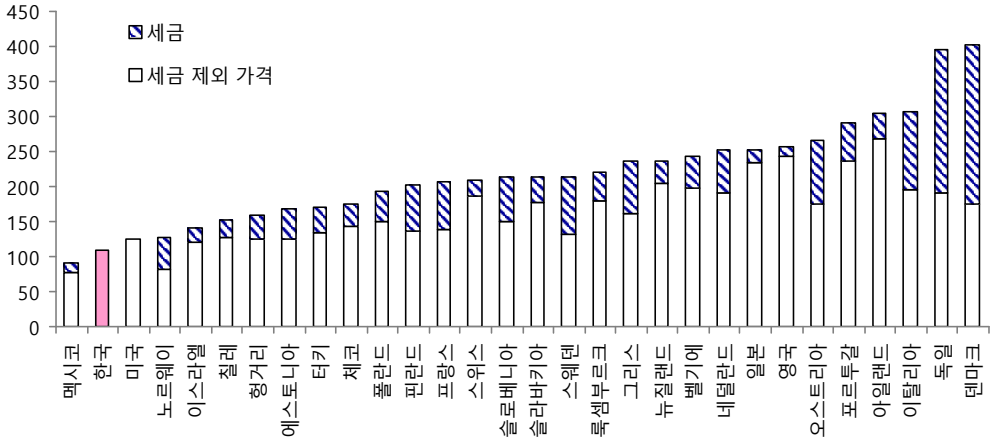
<그림 2> 휘발유의 가격·세금의 국제비교(OECD 회원국, 2015년 3분기)<sup>59)</sup>

에너지원별 전기에너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30개국 중 29번째로 최하위에 가까운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기에너지에 있어서는 개별소비세가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이 있으며, 이는 정책적 이유로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8)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40면.

59)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34면 그림 3-9.

(단위: US\$/MWh)



주: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Energy Taxes and Prices, Fourth Quarter, 2015

<그림 3> 전기(가정용)의 가격·세금의 국제비교(OECD 회원국, 2014년)<sup>60)</sup>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파리협정상 우리 정부가 제출한 NDC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7% 감축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국내 감축분 25.7%와 국외 감축분 11.3%를 포함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위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감축률을 제시하고 있다.

60)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36면 그림 3-12.

&lt;표 6&gt;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부문	BAU(백만톤)	감축량 (백만톤)	감축률(%)	
			부문 BAU 대비	국가 BAU 대비
전환	(334)*	64.5	(19.4)	7.6
산업	481	56.4	11.7	6.6
건물	197.2	35.8	18.1	4.2
에너지신산업	-	28.2	-	3.3
수송	105.2	25.9	24.6	3.1
폐기물	15.5	3.6	23.0	0.4
공공, 기타	21	3.6	17.3	0.4
농축산	20.7	1	4.8	0.1
국내 감축	851*	219	25.7%	
국외 감축		96	11.3%	

\* 국가 총배출량(851백만톤)은 부문별 BAU에 공정 배출, 가스제조 등으로 인한 배출량(약 2백만톤) 및 탈루 배출량(약 8.4백만톤)을 합한 값이며, 전환부문의 BAU는 각 부문별 배출량에 간접 배출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전체 감축량 산정에서는 제외함

자료: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6),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이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부문 운영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에너지원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적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에너지원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기술에 관한 논의가 보다 본격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캐나다 정부 산하에 있는 팔러시 호라이즌 연구소는 미래를 바꿀 에너지 신기술에 대해 17개 항목을 선정하였다.<sup>61)</sup>

61)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52면.



&lt;표 7&gt; 에너지 신기술 현황

	항목	내용	적용 시기
에너지 저장 (ESS)	연료 전지	배터리와는 다르게 연료 전지는 산소 등 연료가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연료만 계속 주입될 수 있다면, 연료 전지는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천연가스터빈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으며, 버스를 포함 대형 전기 차량 등에 전기발전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2013년에 이미 가능하였지만, 2015년에야 비로소 주류 에너지 산업에 진입하고 2016년엔 실제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리튬 공기 전지	재료 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고에너지 리튬 공기 전지가 등장했으며, 리튬공기 전지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 내부 산화제 대신 대기 중의 산소를 이용하고, 전기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	과학적으로 2017년 기술이용이 가능하고 주류 산업에 등장하려면 2018년, 경제적으로 2020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소 에너지 저장과 수송	현존 전력망의 혁명은 전기가 아닌 수소의 수송과 저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수송 방법과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저장량 최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과학적으로, 2021년에는 주류 시장에, 2022년에야 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열 저장 기술	태양열 패널이나 열병합열, 발전소에서 축적된 열을 격리된 보관소에 보내 추후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우주에서 난방이나 가정집 온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 활용될 수 있다. 2022년에 과학적으로 2024년에 주류 시장에 2027년에 경제적으로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스마트 그리드	전기 소비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발전소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발전소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고 보이나, 2016년 이후에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내용	적용 시기
스마트 그리드	분산 전원 시스템	대형 중앙 시설이 아닌 여러 소규모 에너지 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형태다. 중앙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하지만 수송 과정에서 전력이 손실이 생기고 전력망에서 요구되는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데에는 비효율적이다.	분산 전원 시스템은 기존의 대형 중앙 시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2017년, 시장에 2021년, 경제적으로 2022년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에너지 네트 워크	수요량에 따라서 열, 에너지, 천연가스 등을 국외까지 보낼 수 있게 된다.	기술적으로 2019년, 2020년이 되어야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생산	조류 터빈	수력 발전의 형태로 조류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식이다. 현재 소규모로 이용되고 있으나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	과학적으로 2015년, 주류 시장 진입과 경제성을 가지려면 2017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 크로 스털링 엔진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발전기(발전소)로 에너지를 압축하고 확장시킨다. 가설에 의하면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3D 프린터로 프린트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2020년, 시장에는 2026년, 경제적으로 2027년이 되어야 비로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모듈 조정 로봇	소형 로봇이 태양광 모듈의 위치를 날씨 변화에 맞춰서 잡아주는 기술이다. 패널에 기계화된 트래킹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현재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주류 시장에는 2016년, 경제적으로 2017년부터 실행 가능하다.
	2세대 바이오 연료	셀룰로오스 에탄올과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 디젤 등의 바이오연료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굉장히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존 연료와 비슷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으로 2016년, 주류 시장에는 2017년에 진입하고 경제적으로 2021년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투명 유리	가시 광선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전지를 장착한 유리로 전체 건물에서 지붕과 건물 외관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2017년, 시장에는 2020년, 경제적으로 2021년부터 이용될 전망이다.

항목	내용	적용 시기
3세대 바이오 연료	유기체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연료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고효율 조류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하는 기술도 포함되며, 자동 차용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푸란(C <sub>4</sub> H <sub>4</sub> O)을 생산가능하다.	2022년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2024년, 2026년에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주 태양광 발전	빛 에너지를 모아 마이크로파로 지구에 전송할 수 있다.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고, 태양광 에너지를 전송 시 대기권의 온실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2025년, 시장에는 2027년, 2028년 이후에나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원자로	작고 봉인된 형태의 원자로로 배나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다. 이 원자로의 길이는 굉장히 짧고, 10MW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뿐만 아니라 이른 시일 내에 50MW용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적으로 2022년, 시장 진입과 더불어 경제성은 2023년에야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관성 밀폐 핵융합	연료의 관성에 의존해 핵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방식이다. 열핵 연료를 포함한 캡슐이 고온 고밀 상태에서 압축되어, 관성 밀폐의 상태를 확보하게 해준다.	주류 시장 진입과 경제적 상용화는 2021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토륨 원자로	토륨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100%의 순수 사용가능한 동위원소로 농축이 필요치 않으며, 기존 사용 후 핵연료에 비해서 10~1만배 짧은 방사능 폐기물을 배출한다.	과학적으로 2025년, 주류 시장에 들어가려면 2026년, 재정적으로는 2027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호라이즌 캐나다 연구소(2014), 이투뉴스(2014), “미래를 변화시킬 에너지 신기술 17選”을 이용하여 표를 구성<sup>62)</sup>

62) 조민영(2014.04.29.), [특집] 미래를 변화시킬 에너지 신기술 17선,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46>;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52-55면 표 2-17 인용.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에너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 등 사회적 외부효과에 관한 가격 책정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에너지세의 경우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하여 왜곡된 에너지 시장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원의 수급에 있어 변화를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을 야기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오히려 전기에너지의 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에너지 시장에 있어 상대가격 조정에 관하여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요금에 대한 외부 비용 등의 반영을 통한 가격 인상에 관한 검토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등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보급을 위해서는 관련하여 적극적인 재정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현행 왜곡된 에너지 시장의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운용된다면 그 세액을 통하여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투자가치가 낮은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산업 분야

<표 8> 산업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up>63)</sup>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9. 복원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9.1.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 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세계적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 인구의 비율

63) <http://qol.kostat.go.kr/sdg/list.do?idctId=> (최종접속 2017년 10월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9.1.2. 교통수단에 따른 승객 및 화물 운송 규모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9.2.1.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 강화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9.3.2. 부채 및 신용자금을 사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기반시설 개선, 산업시설 개보수, 청정 및 환경친화적 기술을 산업공정에서 사용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9.5. 2030년까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과학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강화	9.5.1.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9.5.2. 거주자 백만명당 연구원 수
	9.a.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인프라 개발 촉진	9.a.1.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식적인 총 국제적 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증가시키는 산업환경 정책을 보장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중 (%)
	9.c. ICT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기술별 이동통신망 이용 가능 인구 비율

## 1. 산업 분야의 해외 사례

향후 산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체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역할과 운영이 보다 증시될 것이며, 이전의 기업 수익창출과 성장에 치중해 왔던 부분은 지역사회·환경 그리고 장기적 차원의 발전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기업 등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주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OECD, World Bank 등 정부 간 경제 발전 등을 위한 다각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구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의무 수행 등을 위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 마련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가. 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형평을 위한 기구인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라 함)에서는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균등한 발전 등 지속가능발전을 통한 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sup>64)</sup>

이에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 다양하고, 적극적인 운영이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GME)을 발행하였고, 이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행위지침으로 권고적 효력을 지닌 임의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sup>65)</sup>

64) ① 고령화대책, ② 뇌물과의 전쟁, ③ 비가맹국과의 협력, ④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⑤ 교육과 훈련, ⑥ 전자상거래, ⑦ 고용, ⑧ 거시경제정책, ⑨ 규제개혁, ⑩ 지속가능한 개발, ⑪ 세제, ⑫ 무역.

65) 김은정·김명수·김운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58면.

그 세부 내용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경제·환경·사회적 발전에 대한 공헌을 촉구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sup>66)</sup> 특히,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방향성 하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그 당사국의 법과 제도 등 정책의 범주 및 관련 국제협약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sup>67)</sup>

#### 나.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CO-Audit)

EC의 경우에는 1993년 1월에 제정되어 1994년에 시행된 산업계의 에코감사제에 대한 자발적인 규제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강제 규범 중 하나였던 ECO-Audit을 삭제하는 대신에 기업이 운영에 있어 환경부문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제도를 통하여 자기 감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C내에 설치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업무 등 특성 상 환경에 있어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이러한 자발적 감사제도가 강제화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몇몇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68)</sup> 따라서 동 제도 하에서는 위험하거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나 운영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EC 프로그램은 감사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준법지원의 승인을 요구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특별한 로고와 광고를 사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으며, 그 로고는 상품을 수령한 고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69)</sup>

66) 이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각국 내의 경제 질서의 보호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김은정·김명수·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58면)

67)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at 42-47.

68) Frank B. Friedman, Chapter 6, in Practical Guide to Environmental Management 66-71 (8th ed. 2000) [hereinafter "Friedman"] at 234-237, 256.

69) Rebecca P. Thompson, Thomas E. Simpson, and Charles H. LeGrand, Environmental Auditing, Internal Auditor (April 1993). EPA announced an initiative to integrate monetary cost information into routine management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13 BATE (No. 7, July 2002) at 11.

#### 다. ISO 26000

국제표준화기구(Interan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1947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글로벌 환경 선언(Global Environmental Initiative)을 통하여 기업이 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70)</sup> 이러한 ISO는 대표적인 연성규범으로 기존의 규범이나 법제와는 다른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실효성이 담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SO에서 제시한 기준을 각국이 국내법으로 수용하거나, 관련하여 제도의 승인 등을 하지 않는 한 그 이행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연성규범의 특징과 같이 ISO는 향후 방향성과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각 사정과 배경에 맞게 운영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ISO 26000은 기업과 민간조직은 물론 공공조직 등 모든 종류의 조직이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이전의 ISO 14000의 경우에는 ISO 14000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행동에 대한 균일한 규칙의 채택을 유도하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sup>72)</sup> 또한 ISO 14000 규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벌금을 통한 환경 관리에 대한 직원의 참여 증대와 문서 관리 및 제조 효율 개선, 비규제 영향에 대한 강화 등을 고려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sup>73)</sup> 하지만 연성규범의 특징에 따라 그 대부분이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였고, 그 적용 대상 기업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sup>74)</sup>

70) Friedman, id, at 237-243, 256-258.

71) ISO, ISO26000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project overview, 2010.

72) Donald A. Carr & William L. Thomas, Devising a Compliance Strategy under the ISO 14000 Inter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s, 15 Pace Env't. L. Rev. 85 (1997) (examining development and adop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and explaining role of ISO 14000 to future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s); Craig D. Galli, ISO 14000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a Nutshell, 9 Utah B.J. 15 (1996) (describing origin and mechanics of ISO 14000).

73) ISO 14001: Greening Management Systems, in Greener Manufacturing and Operations, Chap. 12 (J. Sarkis ed. 2001).

74) 광관훈, “계속(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이와 달리 ISO 26000은 각국 및 모든 기업 등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및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책임의 정의와 개념, 사회적 책임의 배경과 특성, 관련 원칙과 세부지침, 주된 목표, 조직 내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정책과 실행지침,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역할, 정보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이다.<sup>75)</sup> ISO 26000의 대상은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 크게 ① 산업, ② 정부, ③ 소비자, ④ 근로자, ⑤ NGO, ⑥ 서비스·연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sup>76)</sup>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① 지배구조, ② 인권, ③ 노동관행, ④ 환경, ⑤ 공정한 운영 관행, ⑥ 소비자 문제, ⑦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로 나뉘며, 환경의 경우에는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연서식지 복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77)</sup>

##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산업의 성장이 그 이해관계자 및 시장의 중심이 되는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과 기업의 성장이 그 기업의 세부 운영 원칙과 목표에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초한 능동적인 목표와 이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이나 제도를 통한 강제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 실효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영리활동을 통하여 수익 창출이 기업의 운영 목표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등 장기적 차원의 이행지침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 제도 한에서 가능한 영역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 중장기 차원에서 기업의 영리활동 등 수익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특히 환경의 문제는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

2011.5, 161면 참조.

75) 김은정·김명수·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60면

76) ISO, *Discovering ISO 26000*, at 3.

77) ISO, *Id.*, at 6; 김은정·김명수·김윤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60-1면 재인용.

는 만큼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재난·재해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 등 생산 절차 상의 프로세싱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창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에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한 강제적 수단에 앞서 기업의 인식과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조를 통한 사회 분위기 및 기업의 인식 제고라 할 수 있다.

특히나, 기업의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한 기업 등 하나의 주체만으로 운영되거나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그 효과 또한 파급되어 전 세계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와 유도를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관련 기술 개발, 환경오염 방지 등 보다 장기적 차원의 준비와 단계별 대응 방안 수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안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이라 보여 진다.

### 제3절 기후변화 분야

<표 9> 기후변화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7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13.1.1.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 감축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
		13.1.2. 인구 10만명 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통합된 정책/전략/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홍보하는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적으로 결정된 분담, 국가차원의 홍보,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78) <http://qol.kostat.go.kr/sdg/list.do?idctId=> (최종접속 2017년 10월 20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Goal)	세부목표(Target)	SDG 지표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홍보한 국가의 수
	13.a. 의미있는 완화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가급적 조속한 자금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서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겠다는 목표 하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자의 공약을 이행	13.a.1. 약속된 1천억 달러 투입에 대해 2020년부터 실제 동원되는 연도별 금액
	13.b. 여성, 청소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수

## 1. 기후변화 분야의 해외 사례

### 가.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 제20a조에서 “국가는 입법을 통한 헌법합치적인 질서 속에서 법률과 법의 영역에 따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가운데 자연적 생존기초와 동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의무를 국가목표규정으로서 정의하였다.<sup>79)</sup> 이러한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규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업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80)</sup> 특히 미래세대의 이익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을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81)</sup>

이와 같이 독일은 1947년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20a조에 지속가능성의 법적 근거로 마련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세대 간 형평, 삶의 질 향상, 국제적 책임 및 자원조달 확보라는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각 분야별 구체적 방침을 정하며, 민관 및 산학 협력을 강조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sup>82)</sup>

아울러 기후변화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아 EU에서 정하고 있는 감축 목표를 국내 정책과 제도로 수용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환경세법,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난방법 등 각 부문별 제도를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79) 고문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32-3면 참조.

80) 고문현, 「독일 환경법」, 2006, 45-50면.

81)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7, 259면 참조.

82) 장인호, 앞의 논문, 172-187면 참조.

특히, 2017년 재생에너지법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이행방안을 정하여 2020년까지 최소 18%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법 제1조 제3항).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연간 풍력발전소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800메가와트, 2020년까지 2,900메가와트 생산을 규정하는 등 단계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83)</sup>

## 나.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법의 입안 등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연방차원의 실질적인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 Act of 2006을 통하여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차원에서의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하여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약 15% 감축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 이하 ARB)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안(Scoping Plan)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sup>84)</sup>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는 연방차원이 아닌 각 주별로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액션플랜을 통하여 구체화 된 바 있다.<sup>85)</sup> 이후 파리협정에서 미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2025년까지 약 26~28%를 감축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2050년까지 2015년 기준으로 약 80%를 감축하는 양으로 볼 수 있다.<sup>86)</sup> 다음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의 탈퇴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나, 현재의 절차에 따를 경우 2020년 11월 4일에 탈퇴가 현실

83) 정남철 · 이광운 · 전훈 · 김재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7, 59면.

84) 2014년 Climate Change Scoping Plan 참조, [www.arb.ca.gov/cc/scopingplan/fed.htm](http://www.arb.ca.gov/cc/scopingplan/fed.htm).

85)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hite House Archives, 2013, at 6-12, available a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86) NRDC, "The Road from Paris: The United States Progress toward its Climate Pledge", Issue Brief, 2016.11, at 1.

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sup>87)</sup> 이와 같이 파리협정의 경우 그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EU 등 가입국가와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그 지지를 선언하였던 점과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기조가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탈퇴에 관한 부정적인 해석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호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배출 집약적인 전기 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온실 가스 배출이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교토 의정서(1997) 및 파리 협약(2015)에 따라 배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파리 협약 상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는 2030년까지 온실 가스(GHG)를 2005년 수준보다 26~28% 낮추기로 정한 바가 있다.<sup>88)</sup> 이는 기후변화청이 정부에 권고한 목표치(2005년 수준의 45~65%)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이행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아닌 주로 납세자들의 돈으로 충당되는 배출감축기금(Emissions Reduction Fund, ERF) 및 기금의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RF는 2014년 11월 법제화되어 2014년 12월 13일부터 발효된 제도로 정부의 국내 탄소 감축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온실 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다. 동 제도에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배출 증가로 인하여 ERF로 달성된 배출 감축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 장치라 볼 수 있다.<sup>89)</sup>

87) 파리협정의 경우 발효 이후 3년 내 탈퇴 통부가 불가하며, 기후변화협약의 경우에는 탈퇴 통고서 접수 후 1년 후에 탈퇴가 효력을 가지게 된다.

88) UNFCCC 2016,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accessed 1 April 2016,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

89) Australian Government 2015,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afeguard Mechanism) Rule 2015, Explanatory Statement

ERF의 핵심요소로는 배출감축평가, 배출감축구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배출감축평가는 각기 다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프로젝트의 운영자는 등록 절차를 통하여 호주 정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관련 계정에서 배출권을 발행하게 되며, 관련 보고서를 6개월 단위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sup>90)</sup>

배출감축구매란 경매제도를 통하여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로 호주 정부에서는 온라인 입찰 플랫폼을 통하여 청정에너지규제기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ERF의 참여는 민간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2016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는 ERF로 만들어진 배출권이 기존의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sup>91)</sup> 동 메커니즘에 따르면 시설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에만 적용되며, 그 대상으로는 발전, 광업(석탄 & 금속광), 석유가스 추출, 가스 공급, 제조(금속, 시멘트, 석회석 포함), 교통(항공, 해운, 철도 및 도로), 토목건설 및 폐기물을 포함하여 100,000 tCO<sub>2</sub>-e 이상을 직접 배출하는 모든 시설들로 약 140개 기업이 해당되며, 이는 호주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sup>92)</sup>

이 밖에 호주 노동당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이행계획으로 2030년까지 배출을 45% 감축하고 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을 (국내 총 전기 생산의) 50%로 높이며, 호주의 에너지 생산성을 (2010년 기준) 두 배로 확장시키는 목표를 제안한 바 있다.<sup>93)</sup>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제안된 2단계 배출거래제도(ETS) 도입으로, 1단계 ETS는 2018년 7월 1일부터 (교토 의정서의 2차 약정 기간이 끝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으로는

90) Commonwealth of Australia (Clean Energy Regulator) 2015, Participating in the Emissions Reduction Fund Getting started

91) Australian Government 2015,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afeguard Mechanism) Rule 2015, Explanatory Statement

92) Id.

93) Climate Change Action Plan Policy Paper 2016, accessed 10 May 2016,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



연간 25,000톤 이상의 CO<sub>2</sub>-e를 배출하는 시설이며, 교토 의정서에 의거한 호주의 2020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제한하고자 한다.<sup>94)</sup> 2단계 ETS는 2020년 7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파리 협약에 호주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량에 따라 배출량의 단계적 상한량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sup>95)</sup>

이와 별도로 전기 부문 ETS는 2018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부문 전반의 배출 강도 기준선에 따라 각 발전소 당 감축량이 할당되며, 전기 부문 ETS에 따라 발전소에는 장기적 차원의 ETS 운영을 위하여 설정된 전체 배출 감축 임무의 비례 분배를 반영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이 적용될 것이다.<sup>96)</sup>

## 2.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국내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17부터 2036년까지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파리협정에 따른 중장기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방향 설정과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여 그 실효성 확보 및 목표 달성에 있어 획일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단지 환경 보호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과 재해 방지라는 차원 외에도 국내의 경우 에너지안보와 신기술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며, 단지 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보다 넓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국가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온실

94) 호주 노동당의 2016 기후 변화 실천 계획에 따르면 1단계 ETS는 ‘배출총량거래’ 제도와 ‘감축실적거래’ 제도를 혼합한 “총량 제한 및 상쇄권” 체계라 할 수 있다(Climate Change Action Plan Policy Paper 2016, accessed 10 May 2016,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

95) 2단계 ETS에서 호주 ETS는 다른 배출 거래 제도의 탄소시장 연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2단계 ETS에서는 호주 ETS와 다른 배출 거래 제도의 정식 연계 가능성이 고려되었다(Climate Change Action Plan Policy Paper 2016, accessed 10 May 2016,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

96) Climate Change Action Plan Policy Paper 2016, accessed 10 May 2016,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

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같은 법제 및 에너지 법제 등에 그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차원의 기본 계획을 통하여 구체적 감축 목표량을 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이 정책적인 판단으로 변동되기 쉽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변수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도록 보다 제도화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감축 목표 등 중장기 계획 하에서 세부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의 이슈가 사회 전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관련 이행 방안이 공유되어야 하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한계와 경제적인 비용 등 그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에 있어 그 시기, 에너지 사용량 및 경제성장률 등에 관한 전망과 국가 계획, 에너지법 등 타법상 기본 계획과의 정합성, 국제적 기준과 동향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운영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도 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 제4장

#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 제4장

#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 제1절 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안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정책의 목표

#### 가. 유엔 SDGs 2030과 에너지 관련 제도의 목표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에너지와 관련된 목표는 #7 구매 가능한 청정 에너지이다. 이는 “모두에게 구매가능한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관한 부분으로 점차 우리 사회가 ICT 기술의 보급으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점차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기후변화 등 현실적으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에너지 안보, 에너지 관련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보급량 확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촉진을 중요한 의제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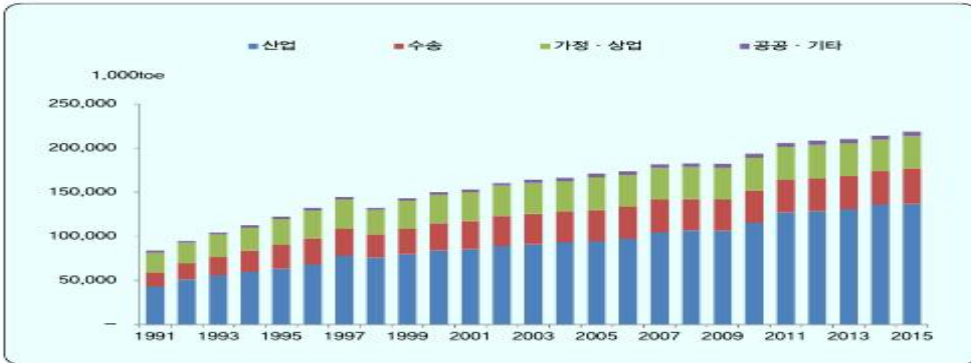
이에 국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들은 경제성장 등 현실적 상황을 바탕으로 수립·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세부목표의 관점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1차 에너지소비량은 270백만toe로 세계 9위였으며, 석유소비는 8위로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세계 15위) 대비 높은 수준이다.<sup>97)</sup> 공급 에너지의 95.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총 소비 에너지 중 석유의 비중이 35.2%로 에너지 안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다.<sup>98)</sup> 에너지원별 공급량은 석유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으로 다음 그림과 같다.

가. 원별 에너지 소비



나. 부문별 에너지 소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2016

<그림 4> 최종에너지 연도별 소비

97)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32면.

98)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32면 참조.

아울러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기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sup>99)</sup>에 따르면 이전의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문제점들을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양적 성장과 공급 중심의 정책 편중, 성과 위주의 정책목표로 구분하여, 낮은 가격 정책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고착화, 전력 등의 특정 에너지원에 소비 편중, 외부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중심의 믹스 정책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평가하였다.<sup>100)</sup> 이를 바탕으로 6대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0>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 과제<sup>101)</sup>

6대 중점 과제	주요 내용
1.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35년 전력수요의 15% 감축</li> <li>● 주요 과제: 에너지 세율조정, 전기요금 체계 개선, ICT 수요 관리 시스템 구축 등</li> </ul>
2.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으로 공급</li> <li>● 주요 과제: 송전제약 사전검토, 분산형 전원 확대 등</li> </ul>
3. 환경·안전과의 조화를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신규 발전소에 대한 최신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li> <li>● 주요 과제: 기후변화 대응제고, 원전 안전성 강화 등</li> </ul>
4. 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안정적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해외 자원개발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11%</li> <li>● 주요 과제: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 신재생 보급확대, 국제공조 강화 등</li> </ul>

99) 2014년 1월에 확정되어 발표된 바 있다.

100) 김은정·오형나·홍인기·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32면.

101)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22면.



6대 중점 과제	주요 내용
5. 월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li> <li>● 주요 과제: 도입선 다변화, 국내 비축여력 강화 등</li> </ul>
6.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목표: '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li> <li>● 주요 과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갈등관리의 선제적 대응 등</li> </ul>

즉, 외부효과를 반영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정책을 바탕으로 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환경과 안전과의 조화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 정책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5년까지 11%로 달성목표를 정하였다.

<표 11>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sup>102)</sup>

연도	2020년	2025년	2035년
비중	5.2%	7.5%	11%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에 관한 목표 달성에 관하여는 회의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핵심기술의 미흡,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취약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투자 유치가 어렵고,<sup>103)</sup> 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야별 중장기 자원배분계획 명시적으로 밝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1~2015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들을 추출하여 재집계하여, 2011-2015년 기간에 걸쳐 계상된 향후 지원규모가 국가기본계획 상의 계획된 규모와 정합성을 보이는지 검토한 결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국가기본계획

102)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105면.

103) 김은정·오형나·홍인기·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33면.

(2008~2030)에서 전망·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정부 재원 소요 누적 예상액(40조원)의 경우 40%에 불과한 9조 5,991억원만이 정부의 중기재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sup>104)</sup>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풍력·해양·수력·바이오 부문에 있어서 국내적 입지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그 확대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는 국내의 친환경에너지 산업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 성장 가운데 환경에 대한 조화를 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원리로 각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에너지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경우 환경과 기후변화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전제조건으로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제조업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ICT 등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로 정립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제도의 주요 내용

에너지에 관한 정책과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제도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 방향성 등 주요 목표가 정립되어야 한다. 국내의 에너지 관련 법제는 대표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에너지법」이 있으며, 양법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리로 ‘에너지 안정공급’, ‘환경친화’, ‘시장원리’를 명시하고 있다.<sup>105)</sup>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 공급 및 가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성의 기본 원리가 작용하게

104) 김은정·오형나·홍인기·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45면.

105)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2013, 13면.

되며, 화석연료가 낳는 대기오염은 환경 보호나 국민보건을 에너지법정책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sup>106)</sup> 아울러 에너지 사용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환경책임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를 통하여 화석연료 사용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요인과 에너지 복지 차원의 취약계층에 관한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함께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sup>107)</sup> 따라서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수립은 그 안정적 공급과 환경적 위해요인에 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등의 추진에 있어서도 Top-down 방식으로만 진행되기 보다는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최근에 결정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협치는 지속가능발전에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등 에너지세 등에 관하여 누진세 등을 통하여 고소득층의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등에 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며, 이는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화석연료의 사용의 단계적 축소 및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경제’ 구현(동법 제22조)을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금 제도로 녹색기술·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신용보증,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특례 등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아울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 및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 운영 및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기술·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sup>108)</sup>

106) Michael B. Gerrard (ed.), *The Law of Clean Efficiency and Renewables*, 2011, at 25.

107) 조홍식, 앞의 책, 14면 참조.

108) 조홍식, 앞의 책, 20면.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에너지법」은 본래 에너지기본법이었으나,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그 하부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에너지원별로 석유·가스, 석탄, 원자력,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법률들이 운영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국내의 제도들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에 따라 그 운영상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국내의 에너지 목표가 국제적 동향에 따른 달성을 위하여 그 목표 설정이 바뀌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UN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과 제도 수립이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 기본 이념과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운영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그 이행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12> 에너지법정책의 이념과 기본 원리 등<sup>109)</sup>

구분	내용	법 제	행정작용 형식
이념	지속 가능 발전	녹색성장 기본법 § 1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각종 기본·실행계획/ 행정행위
		에너지법 § 1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지속가능발전법 § § 1,2 (지속가능성·지속가능발전)(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기본 원리	효율성	녹색성장기본법 § 2 ii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사용); § 3(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 §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각종 기본·실행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등)/ 행정행위
		에너지법 § 1(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	

109) 조홍식, 앞의 책, 23면 표1.

구분	내용	법 제	행정작용 형식
	환경 책임성	지속가능발전법 § 2 i (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녹색성장기본법 § 2 ii (환경훼손 저감); §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법 § 1(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 4③(에너지 생산 등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④(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 § 7iii(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 11(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개발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형평성	지속가능발전법 § 2 i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ii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	
		녹색성장기본법 § 39(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에너지법 § 4⑤(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 10(에너지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법 § 2 ii (정의)(사회의 안정과 통합)			
정책 목표	녹색 성장	녹색성장기본법 § 2 ii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9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에너지법」	각종 기본·실행계획/ 행정행위
정책 수단	녹색성장기본법의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2의5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각종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행정행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석유가스, 석탄, 원자력,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 등 개별 에너지 자원법률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안

### 가. 에너지세의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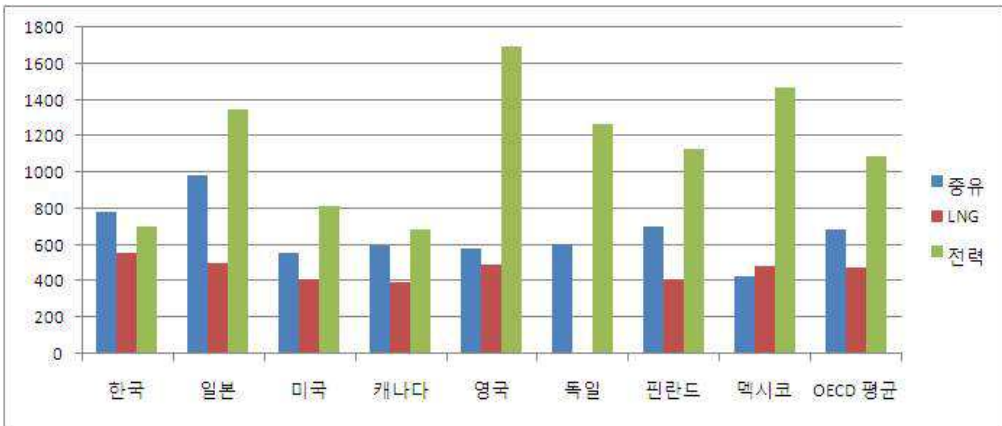
현행 에너지에 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의 단계적 축소 및 에너지자립도 향상
2.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등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저소비·자원순환형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3.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 확대, 에너지공급원의 다변화
4. 에너지가격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도입·개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5.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의 확대 및 형평성 제고
6. 국외 에너지자원 확보, 에너지의 수입 다변화, 에너지 비축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 평균 0.1%씩 증가하는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1.2%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sup>110)</sup> 이는 국내의 경우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 수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그 잠재적인 이유 중 하나가 현행 에너지세의 왜곡현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국내 친환경에너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화석에

110) KBS 뉴스, “한국,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석탄발전 증가 전망”, 2016년 9월 18일자 인터넷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6409&ref=A>)

너지원의 제한이 요구되며, 이에 기반을 둔 전기에너지에 관한 가격 불균형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의 에너지 가격 중 전기 에너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가격 왜곡이 심하다는 것은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5> 중유, LNG, 전기 요금의 비교 (IEA, USD/ToE)<sup>111)</sup>

현재 전기 가격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인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sup>112)</sup>

<표 13> 전기요금산정기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 (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

111)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112) 김은정 · 성명재 · 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92면.

<p>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p> <p>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p>
<p><b>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 등)</b></p>
<p>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li> <li>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li> <li>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li> <li>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li> </ol>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li> <li>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li> <li>④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할 때에 원가 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li> <li>⑤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 원칙, 산정 기간 및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현재 전력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개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비자 요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sup>113)</sup>

$$\text{소비자요금} = \text{전력 도매시장 가격} + \text{송배전 비용} + \text{판매비용} + \text{적정이윤} + \text{세금 및 부과금(3.7\%)}$$

전기에너지의 경우 국내에서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에너지가 산업과 가정 등 국내 전반에 필수 요소인 만큼 적절한 가격의 책정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가격 형평이 고려되지 않는 한 국내의 전기에너지원의 수요는 줄어들기 어려우며, 가격 경쟁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단가(석탄: 50~60원/kWh, LNG: 약 150원/kWh 등)와 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을 통한 발전단가 사이의 격차를 메워주기 위해 최소한 kWh당 100원 이상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경상 GDP 증가율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세율 조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114)</sup>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세제 면제 등의 방안 또한 검토된다면 친환경에너지 기술 육성에 이바지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그 기술 개발과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의 환경적 요소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구축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현행 에너지 시장 상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시장이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원은 친환경적 요소로 인하여 기존의 에너지원이 환경적 외부 요인으로

113) 박광수·김태현,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구축 종합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7면.

114) 김은정·성명재·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94면.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달성과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장기적 차원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 부분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향후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대와 에너지 시장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초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 규제 보다는 추가적 지원제도의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장기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경제성 확보와 대기업 참여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통하여 민간참여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주도형 전환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장 구축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 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운용 범위 개선

현행 에너지세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1993년 「교통세법」으로 신설된 목적세<sup>115)</sup>로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연장 후 2018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처음 교통세 제정의 이유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었던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목적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부족했던 교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되었다.<sup>116)</sup> 제정 당시 교통세법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운영된 목적세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세수 활용에 있어 오히려 도로 건설 등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낮추고, 친환경적인 재화와 서비스 촉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17)</su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조세에 있어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115) 황진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입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299면.

116) 황진영, 앞의 논문, 302면.

117) 김은정·오형나·홍인기·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221면.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동 제도의 경우 재원 확보와 부처 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동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육성 등 친환경 시설과 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산업 분야 제도 개선안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핵심 산업 분야 정책의 목표

#### 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구성 요소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주요 구성요소들로 ① 미래세대의 권리, ② 세대 간 형평, ③ 대중의 참여, ④ 협력, ⑤ 통합, ⑥ 사전주의원칙, ⑦ 보충성 등을 취하고 있다.<sup>118)</sup> 이 중 ① 미래세대의 권리란 세대 간 형평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A. 권장안 초안... 9/ 사회전체와 개인은 세대 간 연대원칙에 따라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생존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함을 상기하면서....”<sup>119)</sup>

② 세대 간 형평이란 현 세대의 권리와 관계된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권리와 책임과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sup>120)</sup> 이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1997년 Gabcikovo-Nagymaros 프로젝트(헝가리/슬로바키아) 사건에 대한 판결<sup>121)</sup>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권리라고 정의하였다.

118) Gyula Bándi, Marcel Szabo & Akos Szalai, Sustainability, Law and Public Choice, 2015; 한국법제연구원 옮김,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2016, 170면 참조.

119) Doc. 12003 Parliamentary Assembly, 11 September 2009, Drafting an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ncern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Report Doc. 11729, Reference 3497 of 28 November 2008, Draft recommendation adopted unanimously by the committee on 4 September 2009.

120)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보호에 관한 인권과 경제개발에 관한 권리간의 갈등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Birnie, Patricia - Boyle, Alan - Rodgwell, Cather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at 115).

121) the Gabcikovo-Nagymaros Project(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at 7-84.

③ 대중참여에 관하여는 오루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 Article I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목적- 현재 및 미래세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각 당사국들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권의 접근을 인정하여야 한다”<sup>122)</sup>

아울러 ④ 협력과 ⑤ 통합의 경우에는 환경에 관한 문제를 사회와 경제 문제와 연관하여 하나로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sup>123)</sup> ⑥ 사전주의 원칙은 사전 예방과 이를 위한 리스크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sup>124)</sup> 마지막으로 ⑦ 보충성의 원칙이란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순위 등 범위 설정에 있어 분배의 원칙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up>125)</sup>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부문의 목표

기업과 관련된 환경피해에 대한 단일 재해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발테즈호 석유 유출 사건(Valdez oil spill)은 1989년 3월 24일 엑손사 유조선 USS 발테즈호가 Prince William Sound 인근 알래스카에서 좌초하여 북미 사상 최대 규모인 1,100만 갤론의 원유가 유출된 사건이다.<sup>126)</sup> 이 사고로 엑손사는 “선박과 화물로 인한 재해손실(약 21억 달러)과 벌금과 배상(약 1억 2,500만 달러), 정부 기관과의 합의(약 9억 달러), 민간 당사자와의 합의(약 3억 달러), 순 보상적 손해배상(약 1,960만 달러)을 비롯하여 석유

122) Bandiya · Gyula, Environmental Democracy, Europa Law Publishing, 2014; 한국법제연구원 옮김, 앞의 책, 173면.

123) SANDS Philippe, The ‘Greening’ of International Law: Emerging Principles and Rul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 Issue 2, 1994, at 302-3.

124) 리우선언 원칙 15

(UNCED conferece, 3-14 June, 1992. Rio de Janeiro ([http://www.nfft.hy/dynamic/Rio\\_Declm\\_pdf](http://www.nfft.hy/dynamic/Rio_Declm_pdf)).

125) CAROZZA Paolo G., Sustidiarity as a Structu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7, 2003, at 44.

126) Inre: The Exxon Valdez, 270 F.3d 1215, 1222 (9th Cir. 2001), remanded to the District Court, 236 F. Supp. 2d 1043 (D. Alaska).

유출로 인하여 총 34억 달러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sup>127)</sup> 이는 현재 사법체계 하에서 해양 오염 등 환경 및 관련 당사자에게 끼친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된 사안이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서 검토되는 경우에는 앞선 결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미래세대의 권리,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 등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현행 산업 등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제 하에서는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요인들을 현실화 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의 경우 그 운영 상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환경 등의 공공을 위한 요인들이 우선되는 것은 실정법상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기업의 운영이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지역공동체 등 직접적 이익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 사항으로 포함시키며 환경적·사회적 조화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sup>128)</sup> UN에서는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문제에 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의 기업이 인권·환경·노동·부패 방지에 관한 10가지 원칙의 지지와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9)</sup>

<표 14> 인권.환경.노동.부패 방지에 관한 10가지 원칙

인권	원칙 1. 기업은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으로 선언되고 있는 인권의 옹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원칙 2.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노동	원칙 3. 조합 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지지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한다. 원칙 5. 아동노동을 실효적으로 폐지한다. 원칙 6.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철폐한다.

127) Id. at 1244.

128) Doreen McBarnet, Aurora Voiculescu & Tom Campbell (eds.), *The New Corporate Account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aw*, 2007, at 9-23.

129)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at 3.

환경	원칙 7.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대처한다. 원칙 8. 환경에 관해서 한층 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원칙 9. 환경에 좋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한다.
부패 방지	원칙 10. 강요와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 방지에 대처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따르는 일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환경 등 미래세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측면과 사후 손해보상의 차원 보다 훨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John Hopkins Medical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청정대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27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향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의료비용 보다 최대 100억 달러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한다.<sup>130)</sup>

아울러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기업의 단기적 재무제표 상의 수치 외에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사회적 공헌, 기업의 경영 목표와 원칙 등을 고려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활성화에 따라 오히려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등 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통한 영리행위에 있어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 및 소비행위와 관련 운영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산업 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ICT 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세부 이행 방안 수립에 보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130) Margaret Graham Tebo · Fertile Water, A.B.A. J. 36-42 (noting that “conditions are good for environmental lawsuits due to the success of Big Tobacco litigation, favorable law and new science.”), Feb. 2001, at 40-41.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안

###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 등 부문에서의 개선방향

기업 등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운영 상 영리 행위를 우선시 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원칙상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기업환경원칙(Corporate Environmental Principles)을 통하여 기업 내 경영 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업이 운영상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준수 여부가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게 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31)</sup> 이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 주주의 이익 외에 판단 요소로 관련 이해당사자(근로자, 거래처 등 포함) 및 지역 사회 구성원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전적 예방 등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에서와 같이 사회 통합과 협력, 그리고 사전예방 등을 통하여 세대 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기업환경원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다.

<표 15> 기업환경원칙상 포함될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관련 제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부문 및 환경 부문 법제도 준수</li> <li>- 제도 목적 상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등을 우선순위</li> </ul>
거버넌스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에 있어 환경 부문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정기 감사 수행</li> <li>- 공시제도 개선을 통하여 환경 부문에 관한 감사 결과 공시 및 관련 보고서 공고</li> </ul>

131)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rimes propose a reduction in criminal penalty if a company h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ee Kenneth S. Woodrow, The Proposed Environmental Sentencing Guidelines: A Model for Corporate Environmental Compliance Programs, 25 Env'tl Reg. 325 (BNA June 17, 1994).

구분	세부 내용
근로자 및 관련 당사자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 등 관련 당사자에게 제품·폐기물·서비스 등 운영 상 야기될 위해요인과 우려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의무</li> <li>- 환경·건강 등에 관하여 대처 방법 교육 및 공고</li> <li>- 위반 사항에 관하여 신고제도 등 장려</li> </ul>
시설 운영 상 평가 및 예방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대응방안 마련</li> <li>- 예방 대책 및 프로그램 개발</li> <li>- 환경영향 평가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한 책임감있는 오염방지 및 폐기물 처리</li> </ul>
환경 복구 등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사용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방안</li> <li>- 재생 천연자원 개발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장기적 차원의 개발 방안 검토</li> </ul>

이러한 기업환경원칙 마련 및 준수는 기업 등의 투자에 있어서 사회적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자 유치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관련 산업의 운영에 있어서 환경 복구와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용의 장려는 자원순환형 산업 구조의 활성화 및 친환경 기술 등의 개발의 촉진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업계 경제 모델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 등에 있어 기본법적 지위에서 사회 전 부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살펴보면 제2~7조에서 녹색성장 및 녹색경영과 국가와 국민 등 각 부문 별 사회적·조직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각 조문별 내용이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기 보다는 선언적으로 각 제도나 부문별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는 국내의 경우 그 개념이 명시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지는 않다. 2011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자들에 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하였으나, 본 조항에 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다는 등의 아쉬움과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sup>132)</sup>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는 “이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각종위원회, 개개의 이사 및 임원은 그 지위에 기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검토함에 있어서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고객, 회사의 영업소 또는 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다른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sup>133)</sup> 중국의 경우에도 2006년에 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sup>134)</sup> 이에 우리의 경우에도 상법 내 회사법 조항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하는 방안 등 관련 제도 상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등 산업 부문의 역할 제고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그 시대와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이 변하게 되는 것이며, 자발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상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여 강제하는 것이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운영 상 역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 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맡기되 적절한 방향성 제시와 촉진을 위하여 미국과 같은 기업환경원칙 등의 가이드라인의 권고와 이행 촉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32) 송호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입법적 구현”,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2. 2, 298면 참조.

133) 1983년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 §1 B.

134) 중국 회사법 제5조 “회사는 경영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사회 공공도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3절 기후변화 분야 제도 개선안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정책의 목표

기후변화에 관하여 현 정부는 정책공약집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정책 공약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탈원전 등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논의 중이라 할 수 있다.<sup>135)</sup>

파리협정 하에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과 세부 이행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이상 기후 현상 완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이에 대한 각국의 피해에 대한 보호와 책임(오염자 부담의 원칙), 사전배려원칙과 협력을 통한 예방과 최선의 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달성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각 부처 간 관련 구체적 방향성은 양 목표 달성에 있어 크게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 파리협정 상 국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정책 수립 및 이행,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동력 구축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과 시장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배출권 시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제2차 파생상품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의 연계 방안, 그리고 기존의 청정개발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CDM 시장의 개편 등에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시급한 문제라 할 것이다.

135) 저자 정리(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년)

부처	국정과제	주요 내용
미래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4-37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더불어 잘 사는 경제-4-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원 기술군 관련 40% 가량 투자</li> <li>- 기초원천 기술 개발 중점투자</li> </ul>
산자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4-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8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원천 분야에 대한 R&amp;D 투자확대로 전략기술의 녹색화, 그린 IT, 에너지자원 기술 개발 등</li> <li>- 청정에너지, 수송시스템, 로봇, SW, 신재생에너지 등</li> </ul>
국토부 해수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8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해양 기술의 IT, BT, NT 등 첨단 기술 융복합화</li> <li>- 생태공간 조성, 도시재생기술, 저공해 차량, 지능형 교통, 물류 전략 등 고품질화 기술군 투자</li> <li>- 미래도시철도기술, 해양관측 인프라 등 구축 계획</li> </ul>
환경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61 신기후체제에 대한 현실한 이행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 대체 수자원 확보</li> <li>- 저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보전조사연구사업 등</li> </ul>
농림부 산림청 안전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3-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측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신종 등식물 병해충 및 인수공통 전염병 대응기술</li> <li>- 자원순환 유기농업기술, 부산물 자원화, 도시생활농업</li> <li>-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탄소변화량 측정평가 기술</li> <li>- 산림 생태계 장기모니터링 및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술 등</li> <li>- 기후변화예측 센서 기술 및 사전 예측 기술 등</li> </ul>
문화부 식약처 기상청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활성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현실 산업기술</li> <li>- 시후변화 질환 대응 진단치료 기술</li> <li>- 기상예측모델, 선진예보 시스템 기술</li> </ul>

<그림 6>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정과제<sup>136)</sup>

아울러 적응 부문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피해 대책으로 국가적응행동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환경영향 평가 등의 시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적응에 있어 해양이나 해안 등 지리적 요인

13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을 바탕으로 구성

과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취약성 평가와 대응방안, 물관리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응 방안, 그리고 국토와 건물 등 도시화에 따른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에너지 공급과 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관리 등에 관한 영향 평가와 대응방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과 보건·건강에 대한 관리와 대응방안 마련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되고, 관련 장기적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sup>137)</sup>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보다 중점적 검토가 필요하다.

**<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 기술 활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분야별 산재된 체계의 범정부적 협업화 방안	새로운 시장 구축 및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 활용을 통한 재난 예방 및 사전 관리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li> <li>- 취약계층 및 지역별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한 복원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협력 방안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실효성 확보 및 협업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li> <li>- 부처별 진행으로 인한 중복 문제나 사각지대 등의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li> <li>- 신기술 이전 등을 통한 국제적 기술 협업</li> </ul>

137) 한국법제연구원 역/ 에르키 j. 홀로·카티 콜로베시·마이클 멜링, 기후변화와 법, 2013, 273~282면 참조.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개선안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지향을 위하여 2017년 7월에 송옥주 의원실에서는 관련된 법안의 제·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격상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전부개정, 새롭게 기후변화에 관하여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 가. ‘기후변화대응법’ 상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의견

‘기후변화대응법’의 경우에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신기후체제 하에서 강화됨에 따라 37%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 강화 및 기후변화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내용을 제정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와 제정 목적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바이나, 기존 녹색성장기본법 상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 방향성과 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법제정의 취지가 약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과 법제정에 따르는 기존 법체계상의 혼란과 그 영향 등에 미루어 보다 기후변화 대응과 제도상 대책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로는 제2조(정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제6호에서 다양한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은 제7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하여는 제8호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PCC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하여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둘의 관계는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 상호 연결된 중요한 관계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행 방안은 완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후변화에 있어 긍정적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냉방시설의 설치와

보급은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로 이어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폭풍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설치한 방파제 등은 자연 해안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연탄소흡수원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 및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이다.<sup>138)</sup> 아울러 친환경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는 수력 발전소나 해상풍력 등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보고서와 협약 등을 기초로 국내 기후변화 관련 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정의를 단지 “온실가스 감축”으로 정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관하여 내린 정의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예방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발의된 법안상의 정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영향의 사례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sup>139)</sup>

-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 증가
- 다른 지역에서 물 부족 심화와 가뭄 증가
- 생태계 변화 확대(종의 서식지 이동)와 종의 멸종 위험
- 소규모 영세 농어민에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
-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증가
- 영향실조와 감염병으로 인한 부담 증가, 일부 질병 매개체의 분포 변화 등

동법이 기후변화에 있어 국제 협약의 적극적 이행의무를 위한 제도로 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적응에 있어 그 정의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시행되는 활동’ 등으로 하는 것 등의 표현 등이 보다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138) 한국법제연구원 역; 앞의 책, 262면.

139) Neil Adger et al., “Summary for Policymakers:.. in Martin L. Parry et al (eds), climate Change 2007;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at 15.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그 부문별 대안과 관련 부처 간의 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체계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환경부 등 한 부처에서 담당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종합계획의 수립·관리·운영·평가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보완된다면 동법 제정에 있어 그 의미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후변화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도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며, 형식적인 민간 위원의 위촉이 아닌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기후변화에 관한 쟁점에 있어 시민들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이 보완된다면 동법 제정이 국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의미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밖에 동법안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으로 그 체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법과의 관계상 보다 기본법적인 지위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법안 제7조에 따르면 타법상의 관계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는 동법안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타법상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가 명시적이지 않은 경우 해석에 의하게 될 것이나, 그 해석상 기후변화 대응이 부차적인 효과로 볼 수 있는 사례 등 모호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어 녹색성장촉진법으로 그 내용 상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이 삭제되는 만큼 새롭게 제정 논의되는 ‘기후변화법’은 그 역할이 분명하고, 이행을 위한 체계와 제도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이 2009년부터 경제와 환경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법 제정은 궁극적으로 그 목표 달성에 있어 기존의 법제도와는 분명히 차별되어 그 제정이유와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제도 개선에 관한 검토 의견

발의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은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으로의 개정으로 이전에 삭제된 상당 부분의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 계획 수립·운영·평가 등 관리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이행방안 수립과 운영 등 성과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기본법화 및 세부 이행방안의 보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다만, 정의 등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1조 (목적)에서는 동법안의 목적을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의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함으로써, 국가와 나아가 전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적 조항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제2조 제2호에서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환경보전,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목적상 앞부분에서 서술된 내용의 반복이기에 후술된 “국가와 나아가 전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제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하여 “2015년 제70회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한 17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SDGs 2030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이행 방안 수립이 필요하긴 하나, 동법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법이라는 측면에서 2030년에 관한 이행방안 수립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다는 ‘UN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관련 목표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와 법체계 상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기본법의 역할과 목적에 있어 그 적용범위는 제도의 목적과 범위 등 그 제·개정 필요성의 근거 및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3조의 기본원칙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용어 선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2호에서 말하는 ‘기존의 규모를 중시하는 성장이 아닌’이라는 문구가 요구하는 규모의 성장에 관한 의미가 수범자의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의 전달과 관련 계획 수립과 운영 상 진행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제3호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의’의 개념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항에서 말하는 ‘환경정의와 사회정의’에 관한 개념이 정의 규정에 추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검토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속가능발전과 그 목표가 추상적인 면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에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이행방안 수립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제도 마련이 아니라 정부·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관협력의 참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 동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협력을 위한 실무위원회 등 구체적 이행방안등 제도 마련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앞서 제기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지위의 격상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제고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사회·환경·경제 전 부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본래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기후변화에 관한 이슈가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지 개념상의 해석과 체계 구분만으로 제도 운영상의 역할 구분과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은 실효성 차원과 당면과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제5장

### 결론



## 제5장

## 결론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이후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 등 NDC상 제출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 기후현상에 따른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지 국제적 합의와 약속이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 하에서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기후변화에 있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자 추진해 왔던 정책과 제도는 이제 단지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 그 성과를 요하는 부분이 되었다.

아울러 2000년 UN에서 제기되었던 MDGs라는 새천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환경·경제·사회의 측면에서 빈곤퇴치 등을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써 개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다. 동 목표가 2015년에 완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SDGs 2030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표 개발 및 관련 성과 관리 등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나 SDGs 2030의 경우에는 17개의 목표를 바탕으로 169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에 그 적용 범위는 우리 사회 전 부문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경제 개발에 있어 환경 보호와 함께 관련 지역 공동체에 관한 지원과 교육을 담보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은 양분하여 논의될 사항이 아닌 상호 연관하여 검토하고, 실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국내에서 주목해야 한 부문은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어 왔듯이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세 분야의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동시에 생활에 있어 기반이 되는 부문이기에 시급하게 다루어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원의 확보와 이로부터 발생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는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비교하여 볼 때 수년 간 담보되어 있는 상태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원 공급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과 화석연료와 석유 에너지원이 국내 에너지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문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가격 상승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시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점차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대체에너지원의 육성에 있어 현재의 왜곡된 에너지 가격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점차 에너지 신기술 시장이 선진국 등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위주로 형성되는 경우 우리의 관련 기술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기술 및 친환경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에 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규제보다는 자발적 준수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원 방안 등을 통한 혜택 제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사회적 이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도 교육과 인식제고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지 몇몇 군소 도서국가를 위하거나,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 인류의 안녕과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으로써 활용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이행방안은 상호 연계성을 통하여 발생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고문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0
- 고문현, 「독일 환경법」, 2006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 곽관훈, “계속(Going Concern)의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회사법”,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2011.5
- 김기숙,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법적 지위와 적용사례분석”, 국제법학회논집 제52권 제3호, 2007
- 김성배,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은경,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과제”, 국회 지속가능발전특위 심포지엄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2014년 12월 11일
- 김은정 · 김명수 · 김운명, 「기후변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김은정 · 성명재 · 유종민, 「Post-기후변화협정에 대비한 신 에너지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법 · 경제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김은정 · 오형나 · 홍인기 · 홍종호,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 · 경제적 융합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 김찬우, “기후변화체제의 형성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Focus , 2005.2
- 김홍균, 「국제환경법」, 2010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2009



-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년
- 박광수 · 김태현, 「시장친화형 에너지 가격체계구축 종합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 박수진 · 정지호, 「해양환경 부문 기후변화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2016
- 송호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입법적 구현”, 「재산법연구」 제28권 제  
4호, 2012. 2
- 윤순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 ECO 13(1), 2009
- 월드워치연구소, 2014 지구환경보고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도요새, 2014
- 이기상, “지구 살림살이를 위한 녹색성장 - 녹색성장의 생명학적 토대 구축 시도”, 환경  
철학 제11집, 한국환경철학회
- 이상훈, “유엔 SDGs와 한국의 기후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7년 5월 17일 세미나 자료집
- 정남철 · 이광운 · 전훈 · 김재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술 정책과 개선방안」, 한  
국법제연구원, 2017
- 장인호,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전재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최신외국법제정보 통권 제36호
- 정영근 · 장민수,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와 발전방향”, 질서경제저널 제10권 1호, 한국  
질서경제학회, 2007

- 정진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의의와 추진체계”,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2017년 5월 17일 세미나 자료집
-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2013
- 최윤철, “지속가능발전원칙과 지속가능발전 기본”, 입법정책 제2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8
- 한국법제연구원 율김(gyula Bándiya, Marcel Szabo & Akos Szalau 지음), 지속가능성, 법 그리고 공공선택, 한국법제연구원, 2016
- 한국법제연구원,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등 관련 법체계 연구」, 국무조정실, 2014
- 한국법제연구원 역/ 에르키 j. 홀로 · 카티 콜로베시 · 마이클 멜링, 기후변화와 법, 2013
-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홍준형,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공법연구 제25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1997
- 환경부, 『파리협정 길라잡이』, 2016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2008
- 황진영,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에 관한 입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9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 외국문헌

-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Maputo Convention)
- Australian Government 2015,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Safeguard Mechanism) Rule 2015, Explanatory Statement

- Birnie, Patricia - Boyle, Alan - Rodgwell, Cather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Oxford Univeristy Press, 2009
- CAROZZA Paolo G., Sustidiarity as a Structu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7, 2003
- Climate Change Action Plan Policy Paper 2016, accessed 10 May 2016,  
[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https://cdn.australianlabor.com.au/documents/Climate_change_action_plan_policy_paper.pdf)
- Climate Change Scoping Plan 2014 [www.arb.ca.gov/cc/scopingplan/fed.htm](http://www.arb.ca.gov/cc/scopingplan/fed.htm).
- Commonwealth of Australia (Clean Energy Regulator) 2015, Participating in the Emissions Reduction Fund Getting started
- Craig D. Galli, ISO 14000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a Nutshell, 9 Utah B.J. 15 (1996) (describing origin and mechanics of ISO 14000)
- Doc. 12003 Parliamentary Assembly, 11 September 2009
- Donald A. Carr & William L. Thomas, Devising a Compliance Strategy under the ISO 14000 InternationalE nvironmentalManagementStandards,1 5 Pace Env't. L. Rev. 85 (1997) (examining development and adop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and explaining role of ISO 14000 to future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s)
- Doreen McBarnet, Aurora Voiculescu & Tom Campbell (eds.), The New Corporate Account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aw, 2007
- Drafting an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ncern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Report Doc. 11729, Reference 3497 of 28 November 2008
- Draft recommendation adopted unanimously by the committee on 4 September 2009

Energy Charter Treaty(ECT), 1994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crimes propose a reduction in criminal penalty if a company h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rancesca Musiani, “Governance by Algorithms”, Internet Policy Review Vol.2, Issue 3. (2013. 08. 09.)

Frank B. Friedman, Chapter 6, in Practical Guide to Environmental Management 66-71 (8th ed. 2000)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International Agreement on Olive Oil and Table Olive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ITTA), 2006

ISO, Discovering ISO 26000

ISO, ISO26000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project overview, 2010

ISO 14001: Greening Management Systems, in Greener Manufacturing and Operations, Chap. 12 (J. Sarkis ed. 2001)

Kenneth S. Woodrow, The Proposed Environmental Sentencing Guidelines: A Model for Corporate Environmental Compliance Programs, 25 Env'tl Reg. 325 (BNA June 17, 1994)

Margaret Graham Tebo · Fertile Water, A.B.A. J. 36-42 (noting that “conditions are good for environmental lawsuits due to the success of Big Tobacco litigation, favorable law and new science.”), Feb. 2001

Michael B. Gerrard (ed.), The Law of Clean Efficiency and Renewables, 2011

- Neil Adger et al., “Summary for Policymakers: in Martin L. Parry et al (eds), climate Change 2007
- NRDC, “The Road from Paris: The United States Progress toward its Climate Pledge”, Issue Brief, 2016.11
-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2011
-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Protocol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in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Jeddah
- Rebecca P. Thompson, Thomas E. Simpson, and Charles H. LeGrand, Environmental Auditing, Internal Auditor (April 1993). EPA announced an initiative to integrate monetary cost information into routine management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13 BATE (No. 7, July 2002)
- SANDS Philoppe, The ‘Greening’ of International Law: Emerging Principles and Rule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 Issue 2, 1994
-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2009
- The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Gorillas and their Habitats
- The Gabcikovo-Nagymaros Project(Hungary/Slovakia), Judgment, I.C.J. Reports 1997
- 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White House Archives, 2013, at 6-12, available a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 UNCED conference, 3-14 June, 1992. Rio de Janeiro  
([http://www.nfft.hy/dynamic/Rio\\_Declm\\_pdf](http://www.nfft.hy/dynamic/Rio_Declm_pdf).)
- UNFCCC 2016,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accessed 1 April 2016, [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http://unfccc.int/focus/indc_portal/items/8766.php)

UNFCCC, Paris Agreement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13

□ 웹사이트

“배출권거래제 활성화...최대화두”, 에너지경제 2017.10.3.일자 기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16030>)

조민영(2014.04.29.), [특집] 미래를 변화시킬 에너지 신기술 17선, 이투뉴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646>

한국환경공단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kecoprummy/220851832823>)

KBS 뉴스, “한국,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석탄발전 증가 전망”, 2016년 9월 18일자

인터넷 뉴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6409&ref=A>)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

---

2017년 10월 27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

값 7,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16-4 93360



기후변화법제 연구 17-17-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 연구**

---

---

2017년 10월 27일 印刷  
2017년 10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

값 7,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16-4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9 788966 848164  
ISBN: 978-89-6684-816-4

값 7,000원